

2016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제2004호
----------	--------

제출일자 : 2017. 5.
제 출 자 : 김포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결산검사 의견서
- 나. 결산서 및 첨부서류

3. 별 첨

- 가. 2016회계연도 김포시 결산검사 의견서 25부.
- 나. 결산서 25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김포시 결산검사위원회

|| 목 차 ||

I. 결산검사 의견서	5
II. 결산검사 경과	9
III. 결산검사 총괄현황	13
1. 재정의 개황	15
2. 세입·세출 결산	16
(1) 총괄	16
(2) 일반회계	17
가. 세입	17
나. 세출	19
(3) 특별회계	21
가. 세입	21
나. 세출	22
(4) 명시·사고·계속비이월	23
3. 재무제표의 결산	24
4. 성과보고서	27
5. 결산서 첨부서류	29
(1) 채권	29
(2) 채무	29
(3) 기금	30
(4) 공유재산	30
(5) 물품	31
IV. 개선·권고 사항	33
V. 우수사례	61

I. 결산검사 의견서

I. 결산검사 의견서

김포시장 귀하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김포시의회로부터 김포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17년 4월 13일부터 2017년 5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6회계연도 김포시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김포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김포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2일

김포시 결산 검사 대표위원 황 순 호

검사위원 신 태 석

검사위원 유 영 태

검사위원 이 선 일

검사위원 이 하 옥

Ⅱ. 결산검사 경과

II.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17. 4. 13. ~ 5. 2. (20일간)

2. 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대표위원	황 순 호	○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총괄	김포시의회 의원
위원	신 태 석	○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신태석세무회계사무소대표
위원	유 영 태	○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세무법인 에이스 대표
위원	이 선 일	○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전기획예산담당관
위원	이 하 옥	○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바르게살기운동 김포시협의회장

3. 검사일정

일 자	내용 및 검사 대상 기관	비고
4. 13(목)	○ 개회식, 결산서 검토 및 자체검사	
4. 14(금)	○ 공보관, 감사관, 의회사무국	
4. 15(토)	○ 결산서 검토 및 자체검사	
4. 16(일)	○ 결산서 검토 및 자체검사	
4. 17(월)	○ 기획재정국	
4. 18(화)	○ 행정지원국, 평생학습센터	
4. 19(수)	○ 경제환경국, 공원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4. 20(목)	○ 복지문화국	
4. 21(금)	○ 안전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4. 22(토)	○ 결산서 검토 및 자체검사	
4. 23(일)	○ 결산서 검토 및 자체검사	
4. 24(월)	○ 도시주택국	
4. 25(화)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4. 26(수)	○ 읍면동	
4. 27(목)	○ 결산검사 의견 토론회	
4. 28(금) ~ 5.1(월)	○ 결산검사 의견서 및 총평 작성	
5. 2(화)	○ 결산검사 총평 (09:30)	

Ⅲ. 결산검사 총괄현황

Ⅲ. 결산검사 총괄현황

1. 재정의 개황

■ 재정규모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5년 평균증가율
세입(A)		799,677	880,975	948,663	1,251,171	1,568,627	18.3
세출(B)		611,626	642,140	743,591	991,290	1,192,351	18.2
잉여 금 (A-B)	소계	188,052	238,835	205,072	259,881	376,275	18.9
	이월금	93,550	76,584	50,248	68,277	147,918	12.1
	보조금집행잔액	1,986	2,536	3,077	3,922	6,562	34.8
	순세계잉여금	92,515	159,715	151,747	187,683	221,795	24.4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은 1,568,62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17,456백만원이, 세출은 1,192,35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1,061백만원이 증가하였다.

<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

(단위: 백만원)

구 분	재 정 상 태			재 정 운 영			비 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6년	5,554,947	145,103	5,409,844	1,223,577	619,400	604,177	
2015년	5,021,363	179,854	4,841,509	973,648	596,971	376,677	
증감	533,584	(34,751)	568,335	249,929	22,429	227,500	

2016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568,335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1.74% 개선 되었으며,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227,500백만원(60.40%) 증가하였다.

2.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세입·세출결산 총괄 >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세 입 · 세 출 결 산		
		세 입	세 출	차인잔액
합 계	1,512,785,644,660	1,568,627,583,764	1,192,351,823,912	376,275,759,852
일반회계	800,358,333,280	844,591,440,930	662,827,107,420	181,764,333,510
특별회계	712,427,311,380	724,036,142,834	529,524,716,492	194,511,426,342
공기업	162,692,464,070	171,518,219,648	67,880,607,350	103,637,612,298
기 타	549,734,847,310	552,517,923,186	461,644,109,142	90,873,814,044

< 차인잔액 현황 >

(단위: 원)

구 분	차 인 잔 액 (다음연도 이월) 내 역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자금없는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합 계	376,275,759,852 (304,000,000)	40,536,924,240	12,637,563,740	94,743,217,000 (304,000,000)	6,562,249,337	221,795,805,535
일반회계	181,764,333,510 (304,000,000)	33,831,424,340	7,827,419,410	56,793,770,010 (304,000,000)	6,505,086,387	76,806,633,363
특별회계	194,511,426,342	6,705,499,900	4,810,144,330	37,949,446,990	57,162,950	144,989,172,172
공기업	103,637,612,298	1,067,653,900	4,810,144,330	720,624,990	56,775,390	96,982,413,688
기 타	90,873,814,044	5,637,846,000	0	37,228,822,000	387,560	48,006,758,484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568,62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512,785백만원 보다 55,842백만원이 증가 수납되었다.

세입·세출 결산결과 376,275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차인잔액에서 명시이월비 40,537백만원, 사고이월비 12,637백만원, 계속비 94,743백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562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21,796백만원이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없는 이월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 되었다.

(2) 일반회계

가. 세입

< 일반회계 세입결산 확인 >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 수 납 액		
				계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결산액	800,358,333,280	919,384,043,560	844,591,440,930	74,792,602,630	8,866,969,140	65,925,633,490
결산확인액	800,358,333,280	919,384,043,560	844,591,440,930	74,792,602,630	8,866,969,140	65,925,633,490
차액	0	0	0	0	0	0

○ 세입결산의 개요

수납액 844,591백만원은 예산액의 105.52%로서 44,233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24,852백만원, 세외수입 9,408백만원, 지방교부세 2,700백만원, 조정교부금 7,162백만원, 보조금 64백만원, 보전수입 47백만원의 초과 수납에 기인한다.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1.86%이며, 결손처분액은 8,866백만원으로 무재산 7,403백만원과 시효소멸 1,463백만원을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었다.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부합되었다.

<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 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844,591,440,930	844,591,440,930	0

2016회계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 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한다.

<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 수 납 액		
				계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2016	800,358,333,280	919,384,043,560	844,591,440,930	74,792,602,630	8,866,969,140	65,925,633,490
2015	704,643,748,690	808,163,924,330	734,384,085,660	73,779,838,670	7,009,402,280	66,770,436,390
증감	95,714,584,590	111,220,119,230	110,207,355,270	1,012,763,960	1,857,566,860	△844,802,900

수납액은 전년도 734,384백만원보다 110,207백만원이 많은 844,591백만원이 수납되었고,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7,009백만원보다 1,857백만원이 더 많은 8,866백만원으로 무재산 7,403백만원과 시효소멸 1,463백만원이다.

< 세목별 세입결산 >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합 계	800,358,333,280	919,384,043,560	844,591,440,930	74,792,602,630	8,866,969,140	65,925,633,490
지방세수입	218,300,000,000	275,376,824,550	243,151,690,610	32,225,133,940	3,716,269,920	28,508,864,020
보통세	210,300,000,000	250,427,990,510	235,404,235,650	15,023,754,860	0	15,023,754,860
지난년도수입	8,000,000,000	24,948,834,040	7,747,454,960	17,201,379,080	3,716,269,920	13,485,109,160
세외수입	69,710,059,000	121,685,177,190	79,117,708,500	42,567,468,690	5,150,699,220	37,416,769,470
경상적세외수입	28,593,860,000	32,045,643,540	31,654,155,320	391,488,220	0	391,488,220
임시적세외수입	41,116,199,000	89,639,533,650	47,463,553,180	42,175,980,470	5,150,699,220	37,025,281,250
지방교부세	68,928,109,000	71,628,117,490	71,628,117,490	0	0	0
지방교부세	68,928,109,000	71,628,117,490	71,628,117,490	0	0	0
조정교부금등	66,827,000,000	73,989,203,000	73,989,203,000	0	0	0
시·군조정교부금등	66,827,000,000	73,989,203,000	73,989,203,000	0	0	0
보조금	216,459,255,000	216,523,763,160	216,523,763,160	0	0	0
국고보조금등	161,220,892,000	161,330,614,600	161,330,614,600	0	0	0
시·도비보조금등	55,238,363,000	55,193,148,560	55,193,148,56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0,133,910,280	160,180,958,170	160,180,958,170	0	0	0
보전수입등	125,655,028,280	125,655,030,080	125,655,030,080	0	0	0
내부거래	34,478,882,000	34,525,928,090	34,525,928,090	0	0	0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28.79%인 243,151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 수입은 9.37%인 79,117백만원이 수납되었다. 지방교부세는 8.48%인 71,628백만원, 조정교부금등은 8.76%인 73,989백만원, 보조금은 25.64%인 216,523백만원이 수납되었다.

나. 세출

<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결산액	739,239,343,000	800,358,333,280	662,827,107,420	98,756,613,760	38,774,612,100
결산확인액	739,239,343,000	800,358,333,280	662,827,107,420	98,756,613,760	38,774,612,100
차액	0	0	0	0	0

○ 세출결산의 개요

예산액은 739,239백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61,119백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800,358백만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21%인 1,584백만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약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비 지급 등 총 16건으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계상이 요구된다.

이체는 예산액의 0.07%인 539백만원으로 2016. 9. 30.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업무변경에 기인한다.

예비비 사용액은 2,177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635백만원을 지출하고 50백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49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81%에 해당하는 662,827백만원이었으며, 이월액은 98,756백만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33,831백만원, 사고이월액은 7,827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57,098백만원이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84%에 해당하는 38,774백만원이었으며, 주요사유는 낙찰차액 등의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 이다.

<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 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662,827,107,420	662,827,107,420	0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

(단위: 원)

과 목	2015 지출액	2016			전년대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금액	비율
합 계	610,797,443,875	800,358,333,280	662,827,107,420	82.82	52,029,663,545	108.52
일반공공행정	39,894,313,130	51,897,210,910	42,803,432,200	82.48	2,909,119,070	107.29
공공질서및안전	15,843,830,150	21,066,089,260	17,350,567,330	82.36	1,506,737,180	109.51
교육	12,818,175,020	13,697,683,000	13,333,970,400	97.34	515,795,380	104.02
문화및관광	22,490,935,540	44,855,374,430	22,641,342,620	50.48	150,407,080	100.67
환경보호	37,379,223,905	47,526,195,150	36,823,906,510	77.48	-555,317,395	98.51
사회복지	212,593,875,010	232,998,407,960	225,105,367,560	96.61	12,511,492,550	105.89
보건	12,223,536,300	14,978,282,000	14,434,696,950	96.37	2,211,160,650	118.09
농림해양수산	32,633,982,200	29,964,843,890	25,773,533,470	86.01	-6,860,448,730	78.98
산업·중소기업	4,029,551,470	14,130,348,000	12,954,162,720	91.68	8,924,611,250	321.48
수송및교통	104,692,631,080	173,120,678,420	124,955,988,730	72.18	20,263,357,650	119.36
국토및지역개발	50,151,933,410	71,638,921,260	56,311,790,050	78.61	6,159,856,640	112.28
예비비	0	6,742,243,000	0	0.00	0	0
기타	66,045,456,660	77,742,056,000	70,338,348,880	90.48	4,292,892,220	106.5

기능별 지출액은 중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225,105백만원, 수송 및 교통 124,955백만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및중소기업 321.48%, 수송및교통 119.36%, 보건 118.09% 이다.

(3) 특별회계

가. 세입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특별회계	712,427,311,380	733,284,314,464	724,036,142,834	52,408,060	9,195,763,570
공기업특별회계	162,692,464,070	176,318,832,038	171,518,219,648	0	4,800,612,390
수도사업특별회계	121,910,182,480	132,318,365,340	129,313,792,540	0	3,004,572,8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0,782,281,590	44,000,466,698	42,204,427,108	0	1,796,039,590
기타특별회계	549,734,847,310	556,965,482,426	552,517,923,186	52,408,060	4,395,151,18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5,106,000	15,189,380	15,189,380	0	0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30,508,706,000	30,515,027,430	30,515,027,430	0	0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461,831,000	421,512,630	407,259,750	0	14,252,880
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	2,038,257,000	2,310,606,050	2,048,622,652	0	261,983,398
교통사업특별회계	6,920,399,000	11,789,220,260	7,941,425,378	1,573,440	3,846,221,442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85,990,560,000	487,697,259,486	487,697,259,486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179,998,000	180,645,500	180,645,500	0	0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458,831,000	503,444,570	462,205,790	0	41,238,780
도시개발특별회계	14,602,000	14,624,970	14,624,970	0	0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2,226,663,000	2,236,086,890	2,236,086,890	0	0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20,062,028,310	20,421,885,350	20,139,596,050	50,834,620	231,454,680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857,866,000	859,979,910	859,979,910	0	0

○ 세입결산의 개요

수납액 724,036백만원은 예산액의 101.62% 11,608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공기업 특별회계 8,825백만원과 기타 특별회계 2,783백만원의 초과 수납에 기인한다.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8.73%이며, 결손 처분액은 52백만원으로 무재산 사유로 43백만원과 시효소멸 사유로 9백만원을 결손처분 하였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징수결정액의 1.25%이며 납세태만, 무재산 등의 사유에 기인한다.

<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 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724,036,142,834	724,036,142,834	0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나. 세출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특별회계	703,201,308,000	712,427,311,380	529,524,716,492	49,465,091,220	133,437,503,668
공기업특별회계	156,281,044,000	162,692,464,070	67,880,607,350	6,598,423,220	88,213,433,500
수도사업특별회계	118,088,241,000	121,910,182,480	34,721,142,910	2,940,295,730	84,248,743,84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8,192,803,000	40,782,281,590	33,159,464,440	3,658,127,490	3,964,689,660
기타특별회계	546,920,264,000	549,734,847,310	461,644,109,142	42,866,668,000	45,224,070,16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5,106,000	15,106,000	14,718,440	0	387,560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30,508,706,000	30,508,706,000	0	0	30,508,706,000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461,831,000	461,831,000	1,084,000	0	460,747,000
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	2,038,257,000	2,038,257,000	1,789,382,762	0	248,874,238
교통사업특별회계	6,867,399,000	6,920,399,000	4,368,436,890	1,485,000,000	1,066,962,11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85,972,243,000	485,990,560,000	448,013,510,960	36,280,822,000	1,696,227,04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179,998,000	179,998,000	143,850,700	0	36,147,300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458,831,000	458,831,000	0	0	458,831,000
도시개발특별회계	14,602,000	14,602,000	0	0	14,602,000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1,655,263,000	2,226,663,000	571,400,000	0	1,655,263,000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7,890,162,000	20,062,028,310	6,741,725,390	5,100,846,000	8,219,456,920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857,866,000	857,866,000	0	0	857,866,000

예산액은 703,201백만원 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9,226백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712,427백만원이었다.

지출액도 예산현액의 74.32%에 해당하는 529,524백만원이었으며, 이월액은 49,465백만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6,706백만원, 사고이월액은 4,810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37,949백만원이다.

<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 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529,524,716,492	529,524,716,492	0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4)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2016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결산 >

(단위: 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합 계	201	141,623,281,760	122	39,469,270,340	31	7,827,419,410	48	94,326,592,010
일 반	192	98,756,613,760	115	33,831,424,340	31	7,827,419,410	46	57,097,770,010
기타특별	9	42,866,668,000	7	5,637,846,000	0	0	2	37,228,822,000

검사결과 명시이월의 경우 122건 39,469백만원, 사고이월 31건 7,827백만원, 계속비 이월 48건 94,326백만원임이 확인되었다.

3. 재무제표의 결산

2016회계연도 김포시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6	2015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5,554,947	5,021,363	533,584	10.63
I. 유 동 자 산	466,052	349,735	116,317	33.26
II. 투 자 자 산	169,262	175,490	△6,228	△3.55
III. 일 반 유 형 자 산	202,018	199,099	2,919	1.47
IV. 주 민 편 의 시 설	705,523	697,079	8,444	1.21
V. 사 회 기 반 시 설	4,007,396	3,596,214	411,182	11.43
VI. 기 타 비 유 동 자 산	4,696	3,746	950	25.36
부 채	145,103	179,854	△34,751	△19.32
I. 유 동 부 채	17,636	30,358	△12,722	△41.91
II. 장 기 차 입 부 채	31,903	56,137	△24,234	△43.17
III. 기 타 비 유 동 부 채	95,564	93,359	2,205	2.36
순 자 산	5,409,844	4,841,509	568,335	11.74
I. 고 정 순 자 산	4,791,103	4,335,741	455,362	10.50
II. 특 정 순 자 산	10,877	10,021	856	8.54
III. 일 반 순 자 산	607,864	495,747	112,117	22.62

2016회계연도 말 김포시의 자산은 5조 5,549억원으로 전년도의 5조 213억원보다 5,336억원(10.63%) 증가하였는데, 이는 장기금융상품을 포함한 투자자산이 62억원(3.55%) 감소하였으나, 유동자산 1,163억원(33.26%)과 사회기반시설이 4,111억원(11.43%)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2016회계연도 말 김포시의 부채는 1,451억원으로 전년도의 1,798억원보다 347억원(19.32%) 감소하였는데, 이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세입세출외현금 장기 보관금을 포함한 기타비유동부채가 22억원(2.36%) 증가하였으나, 신규차입 없이 학운2산업단지 조성 관련 지역개발기금 등을 상환함에 따라 유동부채 및 장기 차입부채가 각각 127억원(41.91%), 242억원(43.17%)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6	2015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I. 사업 순원가 (가 - 나)	227,948	186,255	41,693	22.38
가. 사업 총원가	505,206	458,820	46,386	10.11
나. 사업 수익	277,258	272,565	4,693	1.72
II. 관리 운영비	79,759	93,689	△13,930	△14.87
III. 비배분비용	34,436	44,462	△10,026	△22.55
IV. 비배분수익	25,448	25,714	△266	△1.03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316,695	298,692	18,003	6.03
VI. 일반수익	920,872	675,369	245,503	36.35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604,177)	(376,677)	227,500	60.40

김포시의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 순원가는 사업총원가 5,052억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772억원을 차감한 2,280억원이며, 총 115개의 정책사업 중 순원가가 많은 상위 정책사업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212억원)과 '노인복지 증진' (201억원)이었다.

또한, 2016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729억원과 기타관리운영비 6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66억원,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기타비용 27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 227억원, 기타수익 27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회계연도 김포시의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는 (-6,041)억원으로 전년도의 (-3,766)억원보다 2,275억원(60.40%)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체조달수익 중 지방세수익의 증가와 토지매각사업 수입 및 도시철도 관련 LH 부담금에 의한 것이다.

4.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성과보고서는 특정기관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원칙적으로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전반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확보와 성과보고서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 정보의 신뢰성 검증에 있다.

< 관계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시행 2017. 3. 30)

김포시는 2016회계연도의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 전략목표(9개), 정책사업 목표(91개), 단위사업(25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정책사업 목표 19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김포시 자치단체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은 100%를 달성한 반면 복지문화국과 안전건설국은 55.5%와 52.1% 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각 부서가 전반적으로 성과지표의 설정 근거가 미흡하거나 측정 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지표들이 확인되었고, 성과분석에도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하거나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6회계연도가 성과보고서 작성 첫 해이며,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세부적인 검토 절차가 부족하였으므로 지적사항 발굴 위주의 검사가 아닌 계도와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통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목표 달성현황

(단위: 개, %)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달성 여부		
		개 수	지표수(A)	초과달성 및 달성수(B)	미달성수	달성률 (A/B)
계	9	91	196	140	56	71.4
의회사무국	1	1	2	2	0	100
담당관실	1	10	21	17	4	80.9
경제환경국	1	13	32	23	9	71.8
복지문화국	1	22	45	25	20	55.5
안전건설국	1	12	23	12	11	52.1
도시개발국	1	8	12	9	3	75
행정지원국	1	9	15	13	2	86.6
직속기관	1	8	25	24	1	96
사업소	1	8	21	15	6	71.4
읍면동	0	0	0	0	0	0

5. 결산서 첨부서류

(1) 채권

채권현황

(단위: 원)

회계별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이행기한 도래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합계	계	3,668,846,887	605,609,900	66,623,790	4,207,832,997	502,973,457	3,704,859,540
	원금	3,652,232,287	603,741,920	66,043,780	4,189,930,427	485,070,887	3,704,859,540
	이자	16,614,600	1,867,980	580,010	17,902,570	17,902,570	0
일반 회계	계	3,214,722,917	575,499,230	23,098,090	3,767,124,057	153,069,157	3,614,054,900
	원금	3,214,722,917	575,499,230	23,098,090	3,767,124,057	153,069,157	3,614,054,900
	이자	0	0	0	0	0	0
기타 특별 회계	계	454,123,970	30,110,670	43,525,700	440,708,940	349,904,300	90,804,640
	원금	437,509,370	28,242,690	42,945,690	422,806,370	332,001,730	90,804,640
	이자	16,614,600	1,867,980	580,010	17,902,570	17,902,570	0

채권액은 2015년도 말 3,668백만원에서 2016년에 605백만원이 발생하고, 66백만원이 소멸하여 2016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대비 114.69% 증가한 4,207백만원으로 확인되었다.

(2) 채무

채무현황

(단위: 원)

구 분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64,371,560,000	△29,234,320,000	0	29,234,320,000	35,137,240,000
일반회계	지방 채무	64,371,560,000	△29,234,320,000	0	29,234,320,000	35,137,240,000

채무액은 2015도말 64,371백만원에서 2016년에 29,234백만원을 상환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보다 29,234백만원이 감소한 35,137백만원으로 확인되었다.

(3) 기금

기금현황

(단위: 원)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합계	9,817,453,960	953,920,680	2,963,009,850	2,009,089,170	10,771,374,640
식품진흥기금	383,002,490	△19,745,630	115,301,650	135,047,280	363,256,860
사회복지기금	4,693,895,125	26,907,740	86,295,980	59,388,240	4,720,802,865
노인복지기금	2,134,016,209	27,790,350	71,960,350	44,170,000	2,161,806,559
양성평등기금	300,062,330	109,403,830	109,403,830	0	409,466,160
재난관리기금	2,091,008,146	225,649,100	1,936,132,750	1,710,483,650	2,316,657,246
옥외광고정비기금	215,469,660	583,915,290	643,915,290	60,000,000	799,384,950

기금은 2015년도 말 9,817백만원에서 2016년 2,963백만원을 조성하고 2,009백만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0,771백만원으로 확인되었다.

(4) 공유재산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개, 원)

구분	전년도말현재액 (A)		당해연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말현재액 (D=A+B-C)	
	수량	가 격	증 (B)		감 (C)		수량	가 격
			수량	가 격	수량	가 격		
합계	105,723	2,965,717,934,519	2,183	210,606,155,103	3,612	135,800,758,323	104,294	3,040,523,331,299
토지	13,121	1,792,780,499,673	739	66,446,394,690	63	10,920,403,228	13,797	1,848,306,491,135
건물	297	532,393,857,555	30	12,586,803,902	14	3,684,971,840	313	541,295,689,617
기타	92,305	640,543,577,291	1,414	131,572,956,511	3,535	121,195,383,255	90,184	650,921,150,547

공유재산은 2015년도 말 2,965,717백만원에서 2016년도에 210,606백만원이 증가하고 135,800백만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040,523백만원이다.

주요 증가사유는 한강신도시 4단계 준공에 따른 공원·도로 등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과 통진·월곶·대곶 마을기반 시설 등 각종 토지 매입 등이며, 감소사유는 신곡 7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매각, 구획정리 폐쇄 등이다.

(5) 물품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개, 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물품 증·감 현황						당해연도말 보유액
		취 득		처 분				
		계	구매	계	매각	양여	기타	
수량	1,283	138	138	53	25	17	11	1,368
금액	11,625,783,157	1,363,087,005	1,363,087,005	255,429,877	180,498,792	26,426,560	48,504,525	12,733,440,285

물품은 2015년도말 1,283점 11,625백만원에서 2016년에 138점 1,363백만원이 증가하고, 53점 255백만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368점 12,733백만원이다. 주요 증가사유는 미니버스, 승용차, 화물차 등의 신규 취득으로 발생한 것이다.

IV. 개선·권고 사항

IV. 개선·권고 사항 목록

연번	건 명	소관부서	비고
1	지방세 징수실적 제고	세정과, 징수과	
2	세외수입 징수실적 제고	세입 관리부서, 징수과	
3	세원 발굴 및 관리 노력 촉구	세정과, 징수과	
4	세입예산 편성 철저	부서공통	
5	예산편성 및 지출의 효율성 미흡	부서공통	
6	명시이월 사업 추진 부적절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자원순환과, 건설도로과, 교통행정과, 기술지원과	
7	이월 사업 최소화	교육체육과, 공원관리사업소, 자원순환과, 보건행정과, 농정과, 평생학습센터	
8	계속비 사업 추진 철저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9	예산전용 사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	예산전용 사용부서	
10	예비비 지출 부적절	행정지원과, 세정과, 기술지원과, 공원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11	성과보고서 작성 주의 요구	부서공통	
12	국·도비 보조금 효율적 집행	환경정책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주택과, 행정지원과, 농정과, 수도과	
13	공유재산 활용 재정수입 증대 노력	공유재산 관리부서	
14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 미수납액 징수 철저	복지정책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회계과, 주택과	
15	개발부담금 징수 철저	토지정보과	
16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폐지 등 방안 강구	농정과	
17	토탄농경유물전시관 이용 활성화	인재개발과	

1. 지방세 징수실적 제고

(소관부서 : 세정과, 징수과)

■ 현 황

- 2016회계년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와 관련하여 경기침체 등 어려운 외부환경의 상황에서도 세정과와 징수과가 분리되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직을 운영함.
- 아울러 지방세 콜센터 운영,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의 시행으로 징수 실적의 향상을 위한 노력과 임기제 공무원을 통한 고액체납자 중점 관리, 체납징수 기동반 운영, 채권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보임.
- 표에서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지방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꾸준한 징수율이 상승하고 있고, 더불어 체납액 정리실적이 5%이상 향상된 점은 고무적이라 생각이 됨.

○ 최근(5년간) 지방세 징수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결손액	다음연도 이월액	과오납 반환액	징수율
2012년	167,600	197,448	171,359	9,672	16,417	2,346	86.78
2013년	175,560	201,863	178,247	3,312	20,304	2,462	88.30
2014년	183,600	224,748	196,806	7,463	20,479	2,316	87.56
2015년	199,958	245,450	215,980	4,617	24,853	2,204	87.99
2016년	218,300	275,376	243,151	3,716	28,508	4,357	88.29

○ 최근(5년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징수 실적(과년도분)

(단위 : 백만원, %)

구분	조정액	징수액	결손액	미 수 액	징수율
2012년	18,783	4,168	6,507	8,108	22.19
2013년	16,171	3,991	2,474	9,705	24.68
2014년	22,985	6,857	5,203	10,924	29.83
2015년	21,049	5,447	3,104	12,498	25.87
2016년	24,948	7,747	3,716	13,485	31.05

■ 개선 및 권고사항

- 시 재정의 확충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만큼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외수입 징수실적 제고

(소관부서 : 세외수입 관리부서, 징수과)

▣ 현 황

- 각 부서에 부과하는 세외수입은 타 업무와의 중복, 잦은 담당자 교체 등 체납 관리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징수율이 저조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과에서 이관하여 관리함으로써 고액체납자 대상 현장 방문 납부 독려, 전자예금 압류 시행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였고 부과부서와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2015년 대비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184% 상승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

- 최근(5년간) 세외수입 징수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A)	실 제 수납액 (B)	결손액	다음연도 이월액	과오납 반환액	징수율 (B/A)
2012년	154,840	193,914	162,186	1,572	30,156	279	83.63
2013년	184,549	223,394	187,953	949	34,492	136	84.13
2014년	49,531	98,183	58,606	597	38,980	447	59.69
2015년	47,729	104,281	59,971	2,393	41,917	402	57.51
2016년	69,710	121,685	79,118	5,151	37,416	118	65.02

- 최근(5년간)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징수 실적(과년도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조정액(A)	징수액(B)	결손액	징수율 (B/A)
2012년	27,888	2,914	1,572	10.45
2013년	30,064	3,259	949	10.84
2014년	33,249	3,111	597	9.35
2015년	37,161	3,329	2,390	8.95
2016년	41,145	6,771	5,145	16.45

▣ 개선 및 권고사항

- 다양한 방법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이나, 지방세 징수율에 비해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매년 증가하는 이월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각 부과부서 담당자들의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독촉 및 적기 체납처분 등 현년도 체납징수에 노력.

3. 세원발굴 및 관리 노력 촉구

(소관부서 : 세정과, 징수과)

▣ 현 황

- 김포시는 개발 및 다양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세 감면 등 각종 세수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누락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 특히 2015. 9. 22. 세무조사팀 신설 이후 외부(도)지원에 의지하던 법인 직접 세무조사를, 시 주관 직접 방문 조사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2016년은 404개 업체에 대하여 36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등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임.
- 연도별 세무조사 추진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목 표 액		추징세액		목표액대비 달성율
	법인수	세액	법인수	세액	
합 계	1,019	7,500	1,033	9,089	121.0
2014년	300	2,500	301	3,236	129.4
2015년	319	2,000	328	2,243	112.1
2016년	400	3,000	404	3,610	120.3

※ 추징세액 기준

▣ 개선 및 권고사항

- 앞으로도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된 체계적이고 철저한 세무조사로 세원발굴 및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4. 세입예산 편성 철저

(소관부서 : 부서공통)

■ 현 황

- 자료 : 붙임 1.

■ 지적사항

- 2016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제 세입전망을 추계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추계가 어려울 경우 회기 중 세입이 발생되거나 예측이 가능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 붙임 현황과 같이 공보관 외 13개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없이 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외 30개 부서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150%이상 과부족이 발생 되어 세입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 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201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징수실적과 당해연도 징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또한, 실제 수납된 모든 수입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각종 지역 개발사업, 주민복지사업 등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세입자금이 불용되어 결산이 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편성 시 세입전망을 정확히 추계하여 각 성과소의 세입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 세입예산의 미 편성으로 인한 재정자금이 사장되어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 복지사업 등을 미 추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신중을 기하기 바람.

붙임 1.

○ 세입예산 미편성 세입 발생

(단위 : 원)

부서명	세입목	예산현액	수납액	비고
공보관	불용품매각대	0	70,000	
	그외수입	0	10,490	
식품위생과	과징금및이행강제금	0	3,120,000	
노인장애인과	공유재산임대료	0	146,770	
여성가족과	과태료	0	1,200,000	
문화예술과	과징금및이행강제금	0	7,500,000	
도시계획과	과징금및이행강제금	0	13,985,800	
	불용품매각대	0	8,000	
주택과	과태료	0	32,918,000	
	불용품매각대	0	50,000	
	그외수입	0	42,445,640	
토지정보과	불용품매각대	0	99,500	
	그외수입	0	315,010	
민원여권과	불용품매각대	0	230,000	
도로관리사업소	과태료	0	1,100,000	
공원관리사업소	변상금및위약금	0	1,749,000	
고촌읍	도로사용료	0	632,400	
	기타사용료	0	100,000	
사우동	기타사용료	0	89,000	
	불용품매각대	0	810,000	
	그외수입	0	1,240,720	
풍무동	그외수입	0	200,000	

○ 세입 150% 이상 과부족액 발생

(단위 : 원)

부서명	세입목	예산현액	수납액	부족수납액	비고
정보통신과	공유재산임대료	7,382,000	2,426,690	-4,955,310	
환경정책과	기타사용료	33,600,000	48,255,770	14,655,770	
	그외수입	633,468,000	1,124,253,500	490,785,500	
자원순환과	기타사용료	840,000,000	826,814,560	-13,185,440	
	사업장생산수입	360,000,000	420,085,440	60,085,440	
	과태료	120,000,000	115,281,000	-4,719,000	
	그외수입	9,957,000	18,257,300	8,300,300	
공원녹지과	공유재산임대료	21,102,000	10,533,960	-10,568,040	
	과태료	2,500,000	2,080,000	-420,000	

부서명	세입목	예산현액	수납액	부족수납액	비고
복지정책과	그외수입	49,616,000	183,567,200	133,951,200	
노인장애인과	기타사용료	225,000,000	423,808,440	198,808,440	
	과태료	14,720,000	178,564,640	163,844,640	
여성가족과	기타사용료	20,000,000	17,115,500	-2,884,500	
문화예술과	입장료수입	287,066,000	279,709,590	-7,356,410	
	기타사용료	92,632,000	156,811,930	64,179,930	
교육체육과	공유재산임대료	77,479,000	73,008,350	-4,470,650	
건설도로과	국유재산임대료	50,000,000	59,433,470	9,433,470	
	공유재산임대료	5,000,000	10,841,510	5,841,510	
	기타사용료	63,000,000	25,220,140	-37,779,860	
교통행정과	공유재산임대료	247,000,000	40,930,450	-206,069,550	
	기타사용료	66,132,000	164,365,180	98,233,180	
	과징금및이행강제금	25,000,000	54,571,170	29,571,170	
	과태료	20,000,000	14,264,100	-5,735,900	
	그외수입	2,000,000	4,993,940	2,993,940	
주택과	과징금및이행강제금	400,000,000	1,192,712,100	792,712,100	
토지정보과	증지수입	70,400,000	51,794,250	-18,605,750	
	징수교부금수입	970,000,000	302,723,390	-667,276,610	
행정지원과	기타사용료	90,000,000	87,528,470	-2,471,530	
	그외수입	2,043,000	49,109,690	47,066,690	
민원여권과	기타수수료	300,000,000	365,977,010	65,977,010	
	과태료	3,000,000	2,679,980	-320,020	
보건행정과	증지수입	9,000,000	4,412,200	-4,587,800	
	의료사업수입	900,000,000	605,299,880	-294,700,120	
	과징금및이행강제금	25,000,000	38,526,120	13,526,120	
보건사업과	과태료	1,395,000	2,686,000	1,291,000	
농정과	기타사용료	150,976,000	429,199,460	278,223,460	
	기타이자수입	20,000	5,276,200	5,256,200	
	과태료	1,000,000	10,497,500	9,497,500	
	그외수입	43,899,000	85,711,160	41,812,160	
인재개발과	기타사용료	35,000,000	52,133,000	17,133,000	
	그외수입	3,600,000	6,325,230	2,725,230	
도로관리사업소	증지수입	60,400,000	79,185,000	18,785,000	
	징수교부금수입	55,000,000	88,919,000	33,919,000	
	그외수입	91,412,000	184,328,960	92,916,960	
공원관리사업소	공유재산임대료	9,640,000	121,922,480	112,282,480	
	기타사용료	34,400,000	60,273,830	25,873,830	
환경관리사업소	과태료	123,042,000	328,110,000	205,068,000	

부서명	세입목	예산현액	수납액	부족수납액	비고
통진읍	공유재산임대료	500,000	0	-500,000	
	도로사용료	18,000,000	3,041,350	-14,958,650	
	기타사용료	1,000,000	515,000	-485,000	
	과태료	2,000,000	3,465,910	1,465,910	
	그외수입	12,091,000	12,660,080	569,080	
고촌읍	공유재산임대료	219,000	3,693,200	3,474,200	
	하천사용료	28,000	863,660	835,660	
	증지수입	29,894,000	50,859,550	20,965,550	
	과태료	1,208,000	2,390,700	1,182,700	
양촌읍	증지수입	64,000,000	60,086,750	-3,913,250	
	과태료	6,000,000	3,366,000	-2,634,000	
	그외수입	2,753,000	10,887,650	8,134,650	
대곶면	공유재산임대료	2,000,000	213,230	-1,786,770	
	도로사용료	16,000,000	30,086,110	14,086,110	
	증지수입	56,200,000	54,167,370	-2,032,630	
	과태료	1,000,000	2,306,000	1,306,000	
하성면	도로사용료	20,000,000	38,098,270	18,098,270	
	그외수입	2,040,000	11,449,220	9,409,220	
김포2동	증지수입	40,000,000	61,998,100	21,998,100	
장기동	과태료	1,600,000	2,362,000	762,000	
	그외수입	500,000	982,800	482,800	
구래동	그외수입	257,000	183,200	-73,800	
운양동	과태료	1,500,000	928,000	-572,000	
	그외수입	500,000	8,947,440	8,447,440	

5. 예산편성 및 지출의 효율성 미흡

(소관부서 : 부서공통)

■ 현 황

- 불용액 30%이상 발생 사업 현황(자료 제출부서)

(단위 : 건, 백만원)

회계명	건수	불용액	비고
일반회계	228	8,039	

- 불용액 500만원이상 발생 사업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회계명	건수	불용액	비고
일반회계	452	30,591	

■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법령·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초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을 잘못하여 많은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음.
- 2016년도 결산 검사 결과 예산 편성 후 30%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이 위와 같으므로 예산관리에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수요예측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면 예산의 사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임. 향후 이러한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시정하기 바람.
- 아울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예산은 추경에 삭감하여 필요한 분야에 투입 되도록 하여 예산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권고함.

6. 명시이월 사업 추진 부적절

(소관부서 :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자원순환과, 건설도로과, 교통행정과, 기술지원과)

■ 현 황

○ 3회 추경 또는 마지막 추경 편성 후 명시이월 자료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2016년 예산현액	지출액	2017년 명시이월액	명시이월 사유
정보통신과	네트워크망운영유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3,200	138,365	30,000	우리시 실정에 맞는 최적의 전수 녹취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 시험 운영기간 소요
기업지원과	김포시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22,000	0	22,000	3회 추경예산 확보, 용역 준공 '17. 8월
자원순환과	청소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84,522	61,880	22,500	차량 제조업체 및 조달청에서 1톤 내장탑차(특수차)에 대한 2016년 생산, 등록 계획 미확정
건설도로과	학운리 인도 설치 공사	시설비	120,000	6,343	113,657	동절기 공사중지 도래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건설도로과	마을회관 관리	민간자본 사업보조	431,000	156,000	275,000	마을회관 실시설계용역 집행 및 동절기 공사중지 도래에 따른 사업기간 절대부족
교통행정과	버스준공영제 도입 타당성용역	연구용역비	150,000	0	150,000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연구 용역은 2017년 하반기 준공 예정
교통행정과	택시총량산정 및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22,000	0	22,000	택시총량산정 및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 용역은 2017년 5월 준공
교통행정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민간대행 사업비	120,000	0	120,000	전선 지중화 사업을 통신사업자 측에서 2017년 도부터 공사 추진하여 해당 사업비를 이월
교통행정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130,000	0	130,000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한국전력 측에서 2017년 도부터 공사 착수할 계획으로 이월
기술지원과	쌀품질관리실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500	461	42,000	3회 추경 예산 확보, 조달입찰 낙찰자의 납품 포기로 연내 구입 불가하여 명시이월

■ 문제점

-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단년도 예산주의 한계 해소 및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연도까지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제도임.
- 그러나 위에 표와 같이 연말까지 사업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임을 알고도 3회 추경 또는 마지막 추경에 편성하여 관행적으로 이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이월을 최소화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7. 이월 사업 최소화

(소관부서 : 교육체육과, 공원관리사업소, 자원순환과, 보건행정과, 농정과, 평생학습센터)

■ 현 황

○ 2016년 말 준공, 이월된 용역 등 현황

(단위:원)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교육체육과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32,250,000	26,750,800	18,081,110	8,669,690	5,499,200	화장실 청소 위탁용역비의 4분기 정산 2017.1월중 실시
공원관리사업소	공원시설물 확충 및 관리	시설비	5,894,922,880	5,577,469,280	5,119,832,640	456,058,030	319,032,210	2016년도말 준공에 따른 검사 및 대금지급 기간 부족
자원순환과	도시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1,548,000,000	1,450,706,740	1,338,130,280	110,000,000	99,869,720	2016. 12. 31일자로 가로청소용역 완료 후 2017년 1월 중 정산 준공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110,000천원)
자원순환과	청소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51,084,000	293,271,780	276,133,280	30,000,000	44,950,720	2016. 12. 31.일자로 진공노면 청소차 폐토사 처리 용역 완료 후 2017년 1월 중 정산 준공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30,000천원)
자원순환과	자동집하 시설 (크린넷) 운영	민간위탁금	3,275,707,000	3,005,005,730	2,914,423,730	110,000,000	251,283,270	비정산비 보험료 정산 준공을 위한 명시이월
보건행정과	청사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	138,156,000	121,224,980	116,173,930	5,052,000	16,930,070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으로 2016년 12월 한달간 집행금액 정산하여 2017년 1월 지급
농정과	청사관리	민간대행사업비	70,056,000	61,319,570	56,484,560	5,000,000	8,571,440	2016년 12월 말에 준공계 제출하면 정산기간(14일내)이 필요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함
농정과	유기동물 처리사업	기타보상금	113,000,000	102,264,850	97,407,310	4,857,540	10,735,150	용역수행후 다음달 초에 기성금을 신청하고 정산하여 2017년 1월에 지급함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센터 환경정비	민간대행사업비	135,000,000	114,496,610	104,251,340	10,246,000	20,502,660	민간대행사업비로 2016년 12월 한달간 집행한 금액을 정산하여 2017년 1월 지급
평생학습센터	시설운영 (중봉도서관)	민간대행사업비	225,264,000	185,080,000	169,653,000	15,427,000	40,184,000	민간대행사업비로 2016년 12월 한달간 집행한 금액을 정산하여 2017년 1월 지급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시설운영	민간대행사업비	88,182,000	77,864,700	71,376,200	6,489,000	10,316,800	민간대행사업비로 2016년 12월 한달간 집행한 금액을 정산하여 2017년 1월 지급

■ 문제점

- 당해연도 말에 계약이행이 완료 되었으나 감독부서에서 검수·검사기간 및 계약 부서의 대금 지급기간이 부족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하기 곤란한 경우, 지방회계법 제7조에서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 예외를 적용하여 이월 없이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 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위 현황과 같이 교육체육과 외 5개 부서에서는 2016연도 말에 준공된 용역 등에 대하여 이월을 한 사실이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바람.

8. 계속비 사업 추진 철저

(소관부서 :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 현 황

- 불임 2. 장기 10년 이상 지연·집행 계속비 사업 현황

■ 문제점

- 2016회계연도 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계속비 예산사업은 총 48개 (일반 46, 특별 2) 사업으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 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황과 같이 사업의 통상적인 추진 연한인 5년을 넘어 그 중 일부 사업은 장기 10년 이상 지연·집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계속비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므로 많은 민원과 장애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등 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높아 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그 어느 사업보다 예산을 우선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가급적 5년 이내에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면밀한 점검이 필요.

붙임 2.

○ 장기 지연 계속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공원녹지과	하성근린공원 조성 사업	시설비	2008-01-01	9,196,000	1,397,423	0	1,397,423
			2018-12-31				
안전총괄과	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시설비	2009-03-01	48,600,000	10,047,529	9,807,715	239,814
			2017-12-31				
안전총괄과	한강철책선 제거사업	시설비	2008-01-01	22,865,000	3,364,043	58,730	3,305,313
			2019-12-31				
안전총괄과	한강철책선 제거사업	시설부 대비	2008-01-01	0	171,323	5,164	166,159
			2019-12-31				
안전총괄과	한강철책선 제거사업	행사 관련 시설비	2008-01-01	0	45,000	0	45,000
			2019-12-31				
안전총괄과	나진포천 개수공사	시설비	2004-06-01	43,895,000	5,920,200	2,388,919	3,531,281
			2018-12-31				
안전총괄과	나진포천 개수공사	감리비	2004-06-01	0	858,700	556,900	301,800
			2018-12-31				
안전총괄과	나진포천 개수공사	시설 부대비	2004-06-01	0	10,488	0	10,488
			2018-12-31				
안전총괄과	학현천정비사업	시설비	2004-06-01	8,690,000	1,500,448	1,499,989	459
			2017-12-31				
안전총괄과	원산천정비사업	시설비	2004-06-01	24,840,000	1,112,346	1,110,593	1,753
			2018-12-31				
건설도로과	원당~태리간 광역도로개설사업	시설비	2005-01-01	75,615,000	3,311,171	0	3,311,171
			2020-12-31				
건설도로과	원당~태리간 광역도로개설사업	시설 부대비	2005-01-01	0	15,000	0	15,000
			2020-12-31				
건설도로과	시도5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2004-02-02	25,000,000	15,003,004	7,317,273	7,685,731
			2019-12-31				
건설도로과	시도5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 부대비	2004-02-02	0	50,000	39,092	10,908
			2019-12-31				
건설도로과	누산~마근포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2002-03-01	79,700,000	11,656,761	1,049,917	10,606,844
			2017-05-31				
건설도로과	누산~마근포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 부대비	2002-03-01	0	12,428	0	12,428
			2017-05-31				
건설도로과	접경지역지원사업 (마곡~시암간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2007-07-02	43,500,000	4,156,517	1,411,408	2,745,109
			2021-12-31				
건설도로과	고정~서암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2007-07-01	11,300,000	15,148	0	15,148
			2020-12-31				
건설도로과	고정~서암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 부대비	2007-07-01	0	10,401	0	10,401
			2020-12-31				
건설도로과	하성대로 3-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2009-11-01	5,600,000	1,849,479	316,289	1,533,190
			2017-12-31				
건설도로과	국도48호~지방도355호 간 통진도시계획도로 (중1-7호선) 개설공사	시설비	2009-01-01	13,500,000	1,827,644	1,825,585	2,059
			2020-12-31				
건설도로과	국도48호~지방도355호 간 통진도시계획도로 (중1-7호선) 개설공사	시설 부대비	2009-01-01	0	10,216	0	10,216
			2020-12-31				
건설도로과	장곡IC~고란테간 고촌 도시계획도로(중2-3호선) 개설공사	시설비	2008-10-01	8,700,000	3,203,595	1,483,998	1,719,597
			2017-12-31				
건설도로과	장곡IC~고란테간 고촌 도시계획도로(중2-3호선) 개설공사	시설 부대비	2008-10-01	0	16,347	1,432	14,915
			2017-12-31				

9. 예산전용 사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

(소관부서 : 예산전용 사용 부서)

■ 현 황

- 예산 전용 현황 : 16건, 1,584,750,000원

■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르면 예산의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에 따라 행정과목인 각 단위 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되므로, 예산의 전용을 운용함에 있어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 등을 활용하고 전용은 필요시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하여야 함.
- 그런데도 예산 전용의 취지인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전용이라기 보다는 당초 예산 수립 단계부터 계획상의 착오에 의한 예산 전용으로 판단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예산을 수립 시 사업계획 및 성격을 감안하여 정확한 지출과목을 설정하고, 불가피한 예산의 전용이라도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하기 바람.

10. 예비비 지출 부적정

(소관부서 : 행정지원과, 세정과, 기술지원과, 공원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 현 황

○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원)

부서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율	비고
합 계	2,177,877,000	1,635,313,950	50,000,000	492,563,050		
교육체육과	825,282,000	825,282,000	0	0	100	
안전총괄과	6,500,000	6,500,000	0	0	100	
토지정보과	6,923,000	6,922,230	0	770	99.9	
행정지원과	263,403,000	108,390,980	0	155,012,020	41.1	
세 정 과	622,587,000	321,220,850	0	301,366,150	51.6	
농 정 과	50,000,000	0	50,000,000	0	0	
기술지원과	110,000,000	105,221,300	0	4,778,700	95.6	
공원관리사업소	200,000,000	175,366,780	0	24,633,220	87.6	
환경관리사업소	93,182,000	86,409,810	0	6,772,190	92.7	

■ 문제점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써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회계연도에 재량으로 사용하고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 예산 활용을 위해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여야 하나, 행정지원과, 세정과, 기술지원과, 공원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예산액을 전액 사용치 아니하고 불용 처리한 사례가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써 예비비 지출시 계획 단계부터 지출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비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11. 성과보고서 작성 주의 요구

(소관부서 : 부서공통)

■ 현 황

○ 성과목표 달성 현황

실국명	성과목표					
	전 략 목표수	정 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9	91	196	21	119	56
의회사무국	1	1	2	2	0	0
담당관실	1	10	21	3	14	4
경제환경국	1	13	32	3	20	9
복지문화국	1	22	45	3	22	20
안전건설국	1	12	23	0	12	11
도시개발국	1	8	12	1	8	3
행정지원국	1	9	15	2	11	2
직속기관	1	8	25	2	22	1
사업소	1	8	21	5	10	6

■ 문제점

- 성과지표 중 일부는 목표치를 특별한 노력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설정하거나 단순히 과거 실적 등을 근거로 하는 등 목표를 하향 설정하여 성과달성률을 상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성과보고서 작성시 성과 분석에 따른 성과미달성, 초과달성(130% 이상)한 경우에 원인분석과 개선사항 등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인분석 및 개선사항에 대한 성과분석이 미흡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시 과거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 비교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바람.
- 성과 분석에 따른 초과달성, 미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사항 등을 세심하게 분석하기 바람.

12. 국·도비 보조금 효율적 집행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주택과,
행정지원과, 농정과, 환경정책과, 수도과)

■ 현 황

- 불입 3. : 국·도비 집행잔액 중 3천만원 이상 현황

■ 문제점

- 2016년도에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비 중 불입과 같이 집행잔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과다하게 발생되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해당 부서에서는 도 및 중앙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 초과 수령되거나 시기가 지난 국·도비 수령액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대상사업 및 사업규모(물량 및 금액)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중 3천만원 이상 현황

(단위:원)

부서명	사업명	재원구분	예산액	보조금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환경 정책과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계	2,900,000,000	2,900,000,000	0	0	900,000,000
		국비	2,900,000,000	2,900,000,000	0	2,000,000,000	900,000,000
		시도비	0	0	0	0	0
		시군구비	0	0	0	0	0
복지 정책과	자활근로 사업비	계	214,636,000	214,636,000	127,349,860	0	87,286,140
		국비	167,313,000	167,313,000	96,174,800	0	71,138,200
		시도비	7,099,000	7,099,000	4,654,980	0	2,444,020
		시군구비	40,224,000	40,224,000	26,520,080	0	13,703,920
복지 정책과	자활근로 사업비	계	1,231,129,000	1,231,129,000	1,060,112,330	0	171,016,670
		국비	1,010,808,000	1,010,808,000	871,429,410	0	139,378,590
		시도비	33,113,000	33,113,000	28,324,530	0	4,788,470
		시군구비	187,208,000	187,208,000	160,358,390	0	26,849,610
노인 장애인 과	기초연금	계	48,916,033,000	48,916,033,000	48,841,631,860	0	74,401,140
		국비	34,241,223,000	34,241,223,000	34,189,142,300	0	52,080,700
		시도비	2,934,962,000	2,934,962,000	2,930,497,910	0	4,464,090
		시군구비	11,739,848,000	11,739,848,000	11,721,991,650	0	17,856,350
노인 장애인 과	장애인연금	계	3,630,717,000	3,625,779,000	3,566,138,400	0	59,640,600
		국비	2,541,502,000	2,536,862,000	2,496,296,880	0	40,565,120
		시도비	163,382,000	163,084,000	160,476,230	0	2,607,770
		시군구비	925,833,000	925,833,000	909,365,290	0	16,467,710
노인 장애인 과	장애인 직업재활시 설 운영	계	1,693,409,000	1,700,900,000	1,272,353,500	0	428,546,500
		국비	0	0	0	0	0
		시도비	142,228,000	149,719,000	106,877,710	0	42,841,290
		시군구비	1,551,181,000	1,551,181,000	1,165,475,790	0	385,705,210
여성 가족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계	248,774,000	248,774,000	198,300,000	0	50,474,000
		국비	174,142,000	174,142,000	138,810,000	0	35,332,000
		시도비	11,195,000	11,195,000	8,923,500	0	2,271,500
		시군구비	63,437,000	63,437,000	50,566,500	0	12,870,500
여성 가족과	가정 양육수당 지원	계	16,300,000,000	16,300,000,000	16,231,856,000	0	68,144,000
		국비	10,595,000,000	10,595,000,000	10,550,706,400	0	44,293,600
		시도비	2,852,500,000	2,852,500,000	2,840,574,800	0	11,925,200
		시군구비	2,852,500,000	2,852,500,000	2,840,574,800	0	11,925,200
여성 가족과	보조교사 인건비	계	978,432,000	978,432,000	900,432,790	0	77,999,210
		국비	489,216,000	489,216,000	450,216,390	0	38,999,610
		시도비	244,608,000	244,608,000	225,108,200	0	19,499,800
		시군구비	244,608,000	244,608,000	225,108,200	0	19,499,800
여성 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정지원	계	593,850,000	593,850,000	510,550,000	0	83,300,000
		국비	475,080,000	475,080,000	408,440,000	0	66,640,000
		시도비	59,385,000	59,385,000	51,055,000	0	8,330,000
		시군구비	59,385,000	59,385,000	51,055,000	0	8,330,000

(단위:원)

부서명	사업명	재원구분	예산액	보조금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여성 가족과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계	3,265,600,000	3,265,600,000	2,922,140,000	0	343,460,000
		국비	0	0	0	0	0
		시도비	653,120,000	653,120,000	584,428,000	0	68,692,000
		시군구비	2,612,480,000	2,612,480,000	2,337,712,000	0	274,768,000
여성 가족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계	633,720,000	633,720,000	570,660,000	0	63,060,000
		국비	0	0	0	0	0
		시도비	316,860,000	316,860,000	285,330,000	0	31,530,000
		시군구비	316,860,000	316,860,000	285,330,000	0	31,530,000
여성 가족과	결식아동 급식비	계	310,343,000	310,343,000	171,123,130	0	139,219,870
		국비	0	0	0	0	0
		시도비	93,103,000	93,103,000	51,336,940	0	41,766,060
		시군구비	217,240,000	217,240,000	119,786,190	0	97,453,810
여성 가족과	결식아동 급식비 (토,일,공휴일)	계	50,000,000	50,000,000	13,729,500	0	36,270,500
		국비	0	0	0	0	0
		시도비	50,000,000	50,000,000	13,729,500	0	36,270,500
		시군구비	0	0	0	0	0
여성 가족과	누리과정 운영	계	15,129,944,000	15,129,944,000	15,029,351,150	0	100,592,850
		국비	0	0	0	0	0
		시도비	15,129,944,000	15,129,944,000	15,029,351,150	0	100,592,850
		시군구비	0	0	0	0	0
주택과	기초 생활보장 주거급여	계	5,563,123,000	5,563,123,000	5,244,174,160	0	318,948,840
		국비	4,450,499,000	4,450,499,000	4,195,339,330	0	255,159,670
		시도비	556,312,000	556,312,000	524,417,420	0	31,894,580
		시군구비	556,312,000	556,312,000	524,417,410	0	31,894,590
행정 지원과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 지원단 사회 복지직 인건비	계	315,000,000	315,000,000	258,642,040	0	56,357,960
		국비	220,500,000	220,500,000	181,049,430	0	39,450,570
		시도비	0	0	0	0	0
		시군구비	94,500,000	94,500,000	77,592,610	0	16,907,390
농정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계	253,950,000	253,950,000	144,490,400	0	109,459,600
		국비	160,965,000	160,965,000	84,367,280	0	76,597,720
		시도비	18,597,000	18,597,000	12,024,620	0	6,572,380
		시군구비	74,388,000	74,388,000	48,098,500	0	26,289,500
농정과	학교우유급 식지원	계	289,347,000	289,347,000	192,280,200	0	97,066,800
		국비	173,608,000	173,608,000	115,368,120	0	58,239,880
		시도비	17,361,000	17,361,000	11,536,810	0	5,824,190
		시군구비	98,378,000	98,378,000	65,375,270	0	33,002,730
환경 정책과	대기오염 저감	계	3,000,000,000	3,000,000,000	0	0	3,000,000,000
		국비	3,000,000,000	3,000,000,000	0	0	3,000,000,000
		시도비	0	0	0	0	0
		시군구비	0	0	0	0	0
하수과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계	175,000,000	175,000,000	94,222,000	0	80,778,000
		국비	123,000,000	123,000,000	66,224,610	0	56,775,390
		시도비	0	0	0	0	0
		시군구비	52,000,000	52,000,000	27,997,390	0	24,002,610

13. 공유재산 활용 재정수입 증대 노력

(소관부서 : 공유재산 관리 부서)

■ 현 황

○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현황

(단위 : 원)

부 서 명	징수 결정액	수 납 액	부 서 명	징수 결정액	수 납 액
합 계	415,771,350	406,625,120			
정보통신과	7,521,210	2,426,690	보건 행정과	958,260	958,260
환경정책과	45,157,970	45,157,970	농정과	210,440	210,440
자원순환과	15,720,000	15,720,000	인재개발과	4,149,730	4,149,730
공원녹지과	10,533,960	10,533,960	평생학습센터	18,355,550	18,355,550
노인장애인과	146,770	146,770	공원관리사업소	121,922,480	121,922,480
여성가족과	31,137,710	31,137,710	차량등록사업소	13,895,850	13,895,850
문화예술과	640,480	640,480	고촌읍	3,693,200	3,693,200
교육체육과	73,008,350	73,008,350	양촌읍	184,870	184,870
건설도로과	13,459,720	10,841,510	대곶면	213,230	213,230
교통행정과	40,930,450	40,930,450	월곶면	1,291,100	1,291,100
회계과	7,007,200	7,007,200	하성면	5,632,820	4,199,320

■ 개선 및 권고사항

- 2016회계연도 김포시의 토지 등 공유재산 활용 실적은 22개 관리 부서별로 보면 환경정책과 45백만원, 교육체육과 73백만원, 교통행정과 40백만원 등 총 406백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려 전년 대비 187%가 증가 된 것으로 파악됨.
- 토지 등 공유재산 수입이 시의 세외수입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시 재정 수입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는 노력해 주기 바람.

14.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 미수납액 징수 철저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회계과, 주택과)

■ 현 황

○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 현황 (단위:원)

회계명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
계	35,446,668,860	30,999,109,620	4,447,559,240	52,408,060	4,395,151,180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421,512,630	407,259,750	14,252,880	0	14,252,88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310,606,050	2,048,622,652	261,983,398	0	261,983,398
교통사업특별회계	11,789,220,260	7,941,425,378	3,847,794,882	1,573,440	3,846,221,442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503,444,570	462,205,790	41,238,780	0	41,238,780
공유재산특별회계	20,421,885,350	20,139,596,050	282,289,300	50,834,620	231,454,680

○ 기금 미수납액 현황 (단위:원)

회계명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
계	930,873,370	859,384,950	71,488,420	0	71,488,420
옥외광고물정비기금	930,873,370	859,384,950	71,488,420	0	71,488,420

■ 문제점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세입금액이 4,447,559,240원 미수납 되었으며,
-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930,873,370원을 징수결정하여 859,384,950원을 수납 하고 71,488,420원(7.6%)의 미수납액이 발생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특별회계 및 기금 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미수납액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5. 개발부담금 징수 철저

(소관부서 : 토지정보과)

■ 현 황

-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

(단위 : 건/금액, 백만원)

구 분	건수 부과액	수납액	미징수내역				결손처분	비고
			계	납기 미도래	체납 (재산압류)	소송 계류		
계	3,184	2,376	702	498	204		106	
	153,868	115,377	33,961	25,837	8,124		4,530	
과년도	2,806	2,294	406	215	191		106	
	141,347	113,961	22,856	15,406	7,450		4,530	
2016년	378	82	296	283	13	-		'16.12.31 기준
	12,521	1,416	11,105	10,431	674	-		

■ 문제점

- 개발부담금은 부과 금액이 크고 납부기한이 장기간이므로, 납부자의 의도적 재산 은닉 및 납세 태만과
- 준공 전 소유권 이전으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회피, 업체부도 등의 사유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제도를 통한 조기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 개발부담금 체납 시에는 독촉 및 채권확보를 신속히 하고, 채권확보 후에는 약식감정 및 공매등을 통하여 개발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6.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폐지 등 방안강구

(소관부서 : 농정과)

▣ 현 황

- 2016년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현황
 - 총자산액 : 859,979,910원
 - 순세계잉여금 : 841,995,180원
 - 공공예금이자수입 : 14,413,170원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 3,571,560원
 - 민간융자금 미회수 현황 : 체납자 8명, 34,628,440원

▣ 문제점

-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수입·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회계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운용할 때, 그리고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만 충당할 때 법률에 의해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현재 잔액이 859,979,910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이자수입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으며 보유자금 역시 수년간 미사용 하였고 향후에도 당초 설치한 목적대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자금이 장기간 방치·사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폐지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7. 토탄농경유물전시관 이용 활성화

(소관부서 : 인재개발과)

■ 현 황

- 전시관명 : 토탄농경유물전시관
- 개 관 일 : 2014. 03. 27(목)
- 장 소 :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525
 - 마송근린2공원 관리사무소 2층(181.44m²)
 - 제1전시관(토탄전시관) 95.5295.52m², 제2전시관(농경유물전시관) 85.92m²
- 전시유물 : 총 110종 196점 (2017.01. 현재)
- 전시관 근무현황 : 상시근무자 부재로 한시적 공공근로 활용

■ 문제점

- 김포정명 1,260년을 맞이하여 김포시의 역사와 전통을 알리고 김포농업 5,000년 역사를 알리는 토탄농경유물전시관의 홍보를 통해 이용객증가 도모 필요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근무자 부재로 상시 안내가 어려우므로 인사팀과 업무협의를 통한 상시근무자 배치 방안과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
- 관내 학교 재량활동과 연계한 전시관 견학 및 농업인단체 자궁심 제고를 위한 견학활동 추진 등 이용활성화 방안 강구해 주기 바람.

V. 우수사례

V. 우수사례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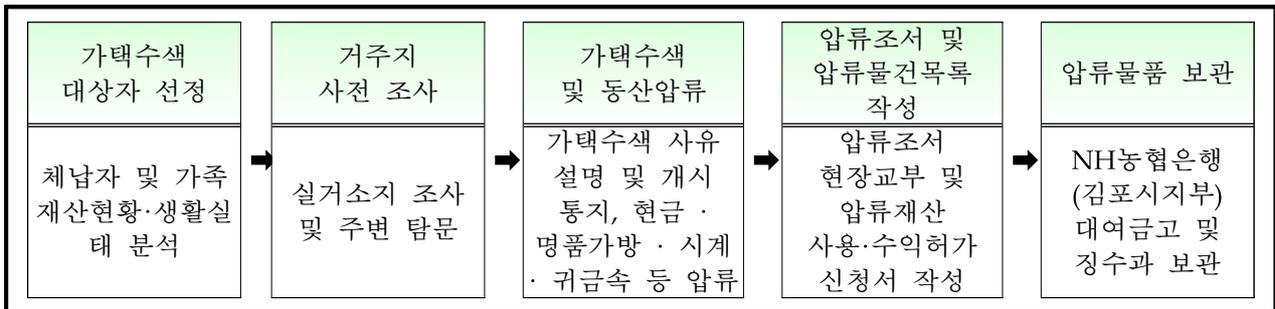
연번	건 명	소관부서	비고
1	지방세 고액채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징수과	
2	운양동 한강하구변 복합서식처 조성사업	공원녹지과	
3	양곡 문화교육지원센터 건립 위한 예산 확보	공원녹지과	
4	누산~마곡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건설도로과	
5	차량 과태료 체납액 10억 초과 징수 달성	차량등록사업소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재산 은닉 및 탈루, 위장 이혼, 사업자 명의도용 등 납세회피 행위의 고도화
- 압류재산이 없는 무재산자의 시효경과로 조세채권 소멸 우려
- 체납자에게 실질적 제재를 줄 수 있는 강력한 강제 수단의 필요성
- 성실 납세풍토 조성 및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제도 방법의 강구

□ 추진개요

- 기 간 : 2016. 1월 ~ 12월 (연중)
- 대 상 : 5백만원 이상 체납자
- 구 성 : 체납징수팀장 등 4명
- 절 차



□ 추진실적

- 2016년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추진실적

(단위 : 건, 천원)

일자	대상	합계	명품가방	지갑	시계	귀금속	기타	현금
6회	27명	191	27	16	18	102	28	147,940
'16.1.28	5명	106	21	15	15	42	13	7,201
'16.2.25	4명	34	1	-	3	26	4	58,231
'16.3.16	3명	3	2	-	-	-	1	23,376
'16.5.18	5명	18	-	-	-	12	6	26,600
'16.7.7	5명	26	3	1	-	22	-	12,532
'16.10.18	5명	4	-	-	-	-	4	20,000

✓ 현금 압류분 중 현장납부 ☞ 13명 / 89,207천원

✓ 기타물건 : 골프채, 미술품, TV, 악기, 주류, 상품권 등

○ 압류명품 등 자체공매 실시('16. 4. 15) (* 기초자치단체 전국 최초)

구분	계	명품가방	지갑	시계	귀금속	상품권
총계	83건	8건	5건	8건	41건	21건
낙찰	37건	4건	3건	8건	20건	2건
	11,654천원	1,327천원	861천원	2,476천원	6,981천원	9천원
유찰	46건	4건	2건	-	21건	19건

○ 경기도 합동 공매 실시('16. 6. 9)

구분	계	명품가방	지갑	귀금속
총계	27건	4건	2건	21건
낙찰	18건	3건	2건	13건
	3,072천원	1,006천원	479천원	1,587천원
유찰	9건	1건	-	8건

☞ 붙임 : 보도자료(활동사진 포함)

□ 추진성과

-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징수 된다는 인식의 전환
-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
-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통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운양동 한강하구변 복합서식처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운양동 1246-1번지 조류생태공원 낯알들녘내 미경작지
- 사업량 : 19,002m²
- 사업기간 : 2016. 05.(환경부 승인) ~ 2016. 12.
- 사업비 : 5억원 (국고 100%)
- 사업자 : 에코엔지오(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 사업주요내용
 - 조류서식처, 갈대군락, 생태광장, 소나무·물푸레숲, 맹꽁이 서식처, 습지조성 (낯알들녘 염분피해 해결을 위한 저수공간 확보), 다양한 식생식재, 생태시설물 설치 등 복합서식처 조성

□ 추진실적

- 2015. 12. 21 2016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공모사업 신청(공원과→환경부)
 - ▶▶ 조류생태공원 기본설계용역을 통하여 생태계 분석 및 계획수립 매칭
- 2016. 02. 02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평가(환경부)
 -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김포시 매칭 작업 추진
 - ▶▶ 김포시 자체 예산으로 반환사업 실시설계 매칭 추진(사업비 확보 의지)
 - ※ 2015년 용역비 집행잔액을 매칭예산으로 추진 하였으나 향후 실시설계는 국비에서 추진(예산절감)
 - ▶▶ 시유산지 어린나무 숲아내기 대상수목 500주를 이식 매칭(예산절감)
 - ▶▶ 관내 산지전용 대상지에서 양질의 토사를 무상반입(예산절감·생육환경 개선)
- 2016. 02. 03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환경부→공원과)
 - ▶▶ 전국에서 신청한 공모사업 53개소 대상지중 15개소만 선정됨
- 2016. 03. 11 세부계획서, 납부 증빙서(10억원) 및 대행동의서 제출(공원과→환경부)
 - 김포시 4억원을 제외한 6억원의 대행동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종 LH에서 승인받음(당초 LH 자체사업을 위하여 거부함)

- 2016. 04. 세부사업계획에 따른 환경청 및 생보협 자문위원 현장확인(환경부)
- 2016. 05. 03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공모사업 세부사업계획 승인(환경부→공원과)
- 2016. 05. 12 김포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추진(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포함)
- 2016. 07. 07 김포 운양동 한강하구변 복합서식처 조성사업 착공
- 2016. 12. 사업완료 및 환경부 현장점검, 모니터링 실시

□ 추진성과

- 습지복원 및 복합서식처 조성을 통한 아름다운 생태경관을 제공하고 기존 생태공원시설을 확장하여 많은 시민들이 생태체험과 쉼터의 기능을 확대
- 더욱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만족도 향상 및 환경교육 추진
- 수원확보를 통한 낱알들녘 염해피해 방지 및 모니터링을 통한 방향모색

양곡 문화교육지원센터 건립 위한 예산확보

□ 예산확보 개요

- 위 치 : 양촌읍 양곡리 1259번지(양곡 제3호 근린공원)
- 요구사항
 - LH가 조성한 양곡·마송지구내 오수처리장 철거 후 신규 건축물 설치비용 942백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 및 금액관철
 - ▶ LH에서는 준공이후 건축 및 비용처리는 불가능하며 요구금액도 과다 의견
- 협의결과
 - LH에서 95%의 금액인 895백만원을 김포시에 지원하기로 합의 및 납부
 - 시 예산 부담없이 양곡 문화교육지원센터 건립추진 예산 확보(2017년 본예산)

□ 추진실적

- 2014. 10. 14 양곡 임시오수처리장 리모델링 활용방안 결과 보고(공원과)
 - LH 용역결과 구조적한계·인체유해물질 등으로 인하여 리모델링 사용은 부적합
 - 전면 철거 대신 상부구조물만 철거(하부구조물 매립) 후 공원으로 재조성 수용
- 2015. 03. 30 양촌 주민자치회 임시오수처리장 리모델링 재검토요청 회의(리모델링 불가)
- 2015. 11. 19 신규건축물 비용부담 세부내역 예산수립요청(1차)(공원과→LH)
- 2015. 11. 30 신규건축물 비용부담 의견 회신(처리방안 검토중)(LH→공원과)
- 2016. 01. 07 ~ 2016. 05. 26 신규건축물 1차~9차 비용부담 요구
- 2016. 05. 26 신규건축물 비용부담 관련 최종 합동회의(공원과, LH)
 - 1차~9차까지 지속적인 노력 및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5% 감액 후 금액확정
- 2016. 06. 03 합동 회의를 통한 금액 확정 통보(895백만원)(공원과→LH)
- 2016. 06. 08 신규건축물 비용부담액(895백만원) 납부방법 요청(LH→공원과)
- 2016. 06. 15 신규 공원건축물 LH 비용부담 추진방향 보고(공원과→LH로 고지서 발부)
- 2016. 08. 11 LH에서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895백만원 납부 완료

□ 양곡 문화교육지원센터 건립 개요

- 위 치 : 양촌읍 양곡리 1259번지(양곡 제3호 근린공원)
- 사 업 량 : 연면적 460m²(지상1층)
- 사업기간 : 2017. 03. ~ 2017. 12.
- 사 업 비 : 895백만원 (설계비 52백만원, 공사비 816백만원, 감리비 등 27백만원)
 - ▣ 2017년 본예산에 895백만원 예산수립 및 건축설계용역 진행중
- 사업내용 : 다목적교실 등 문화교육을 위한 공간 확보
(유아숲·산림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 공간, 양촌읍 문화프로그램·강의 운영 등)

□ 추진성과

- 공원이용객을 비롯하여 지역시민에게 문화교육 및 양질의 공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만족도 향상
- 유아숲체험·산림휴양문화센터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비롯하여 양촌읍에서 주민을 위한 문화교육·커뮤니티·강의 등의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시민 이용기대 욕구 충족

누산-마곡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통진읍 수참리 ~ 하성면 마곡리 일원
- 사업규모 : 도로확포장 연장(L)=3.94km, 도로폭(B)=19.5m (2차로→4차로)
- 사업비 : 12,885,700천 원 (도금액 7,744,960 , 관금액 5,140,740)
 - ※ 양여금지원 폐지되어 전액 시비로 충당하고 있음
- 사업기간 : 2014.05.26. ~ 2017.07.22.

□ 추진실적

- 2012.10.10. : 군사협의 심의결과 통보 (해병2사단→市)

< 군사협의 조건내용 ('12년10월 심의) >

-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 훼손 및 기능발휘의 제한이 되는 군사시설에 대해서 군부대 요구지점 및 요구성능에 준하도록 신축
 - 하사리 인근 유개진지 1동, 교통호 50m
 - KBS송신소, 세광교회 인근 목진지 2동 신축
 - 통신관로 FC100mm*2공, 광케이블용 COD 100mm 1공
통신케이블 FS0.9mm*200pr/1조, 통신맨홀 직2호
- 하양교(서암천), 하사교(수참천) 교량에 대해 유사시 거부할 수 있도록 군 부대 요구성능에 준하는 거부시설(폭약류, 보관장소 포함) 설치
- 군사시설(유개진지, 교통호, 목진지, 통신케이블, 거부시설) 신축/이전시 세부내용은 해당 작전부대와 협조 후 시행
- 이행각서 제출 후 사업시행, 미 제출시 군사협의 취소됨.

- 2014.11.27. : 군사협의 조건사항 협의 (市→해병2사단)
- 2014.12.04. : 군사협의 검토결과 통보 (해병2사단→市)
 - ※ 작전환경 및 작전계획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사항으로 조정 불가
- 2016.02.19. : 군사협의 관련 실무자 협의 (해병2사단)
 - ※ 도로사업 전 구간(3.94km) 통신관로 이설 요구 (약1,150백만원 소요)
- 2016.03.15. : 군 시설물 이설 협의 (市→해병2사단)

- 2016.03.31. : 군 조건사항 재검토를 위한 업무협의 (해병2사단)
 - ※ 사업예산 부족 및 공사기간 부족 피력, 기존 시설물 최대한 활용 건의
- 2016.04.01. : 군사협의 조건사항 재 협의 (市→해병2사단)
 - ※ 과도한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不要不急 조건사항만 제시 할 것
- 2016.04.04. : 군사협의 조건사항 현장 실사 (도로현장)
 - ※ 지형변화, 예산부족, 기존시설물 최대한 활용 등 조정제안 현장여건 설명
- 2016.04.22. : 군사협의 심의결과 통보 (해병2사단→市)

※ 기존 시설물 최대한 활용 ••• “김포시 의견에 동의”

- ☞ 도로확장 시공간섭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만 이설**
- ☞ 군사시설(유개진지 1동, 교통호 50m, 목진지 2동 신축 등) **제외**
- ☞ 거부시설(교량2개소 폭약류 , 보관장소 등) **제외**
- ☞ 광케이블용 COD 100mm 1공 **제외**

□ 추진성과

- 군사조건 재조정에 의한 사업비 절감

군사협의 조건사항	사업량		개략사업비 (천원)		증·감	비고
	당 초	재 협의	당 초	재 협의		
합 계			1,485,000	452,332	감1,032,668	
[군사시설]	유개진지1동	제외	15,000	-	감15,000	
	교통호 50m					
	목진지 2동 신축	제외	20,000	-	감20,000	
[통신시설]	FC100mm*2공	도로 전구간 이설	1,150,000	452,332	감697,668	
	COD 100mm 1공	일부구간 이설				
	FS0.9mm*200pr/1조	- 연장 1.7km				
	통신맨홀 직2호	- 연장 3.94km				
		- 맨홀 15개소				
		- 맨홀 6개소				
[교량거부시설]	교량 2개소	제외	300,000	-	감300,000	
	(폭약류 보관장소 등)					

- ※ 군사협의 조건사항에 대하여 2년간 해병2사단과의 지속협의를 통해
우리시 입장을 관철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1,032,668천 원 사업비 절감

차량 과태료 체납액 10억 초과 징수 달성

- 차량세무팀 신설에 따른 전문적인 체납액 징수방안 마련
- 채권확보 문제점 해결방안 강구를 통한 징수효과 증대
- 지속적인 납부 안내 및 독려를 통한 납세의식 고취

□ 사업개요

- 차량세무팀 신설 : 2016. 9. 30.
- 신설 목적 : 차량 과태료 이월 체납액 징수 및 정리
- 구성 인력 : 체납담당 3명(기준 : 세무 1, 임기제 1명 ⇒ 세무 1 보충)

□ 추진실적

- 체납액 징수 및 정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이월체납액(A)	정리 현황			징수율 (C/A)	정리율 (B/A)
		계(B)	징수액(C)	결손액		
2016년	17,068	3,696	1,189	2,507	7.0	21.7
2015년	16,904	1,692	727	965	4.3	10.0
2014년	15,239	583	485	98	3.2	3.8
2013년	14,692	1,284	618	666	4.2	8.7
2012년	13,726	1,148	480	668	3.5	8.3

- 차량 과태료 체납액 **1,189백만원** 징수(전년대비 **↑163.5%** 초과 징수)
- 결손처분 확행 : 징수불가능(부실채권) 체납액 정리 ⇒ 징수율 상승효과 기대
- 체납액 징수활동 실적
 - 부동산 : 년 2회 이상 전국재산조회 실시로 적극적인 압류처분(1,940건)
 - 예 금 : 전자예금압류서비스(EGS-pro) 시스템을 통한 예금압류 및 추심 ⇒ **세외수입 최초(1,810건)**
 - 급 여 : 고액·고질 체납자 급여압류 및 추심 ⇒ **세외수입 최초(998건)**
 - 번호판영치 : 10월부터 주 2~3회(주·야) 번호판 영치단속으로 납세의식 고취
 - 체납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 : 매일 납부 안내문 및 체납 고지서 발송

- SMS 납부안내 : 과태료 미납자 납부안내 및 미가입자 사전안내 서비스를 통해 납부자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이월체납액 최소화 기여 ⇒ 10 ~ 12월 추진
- 고액체납자 방문 징수독려 : 징수의지 표명 및 경각심 고취 ⇒ 10 ~ 12월 추진

□ 추진성과

- 전문적인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한 납세의식 고취 및 징수율 제고
- 적기 사전안내로 고액 과태료 발생 최소화 및 신뢰행정 구현